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	<b>보 도 자 료</b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6. 3. 29(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기금과	담당 자	·과장 김철홍, 사무관 하재범, 주무관 김대영 ☎ (044)201-4505, 4508 ·과장 윤종수, 사무관 문기성, 주무관 이지은 ☎ (044)201-3352, 4740, 3359 ·과장 김홍목, 사무관 서지웅, 주무관 이경은 ☎ (044)201-3337, 3341, 3345	
보 도 일 시	2016년 3월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 3.28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에 매입·전세임대 우선 공급

### -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-

□ 매입·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,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.29일부터 20일간(3.29 ~ 4.17)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「주거급여 지원 강화」를 위해 매입·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\*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\*\*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
\*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

\* 가산점 기준: (80%초과) 5점, (65%~ 80%) 4점, (50%~65%) 3점, (30%~50%): 2점

○ 또한,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.

②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하였다.

③ 국가,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하였다.

-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, 85제곱미터(m<sup>2</sup>)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%로 정했다

□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「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」은 관계기관 협의,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'16. 4월중 공포·시행되며,

- 다만,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'1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 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
(전화 : 044-201-4505, 4508, 팩스 044-201-5659)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하재범사무관(☎ 044-201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